

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!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()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특수판매업체 집합시설(홍보관 등)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서울시에서는 「2020. 6. 8.(월) 11:00부터」 서울시 모든 특수판매분야(방문판매 · 다단계판매 · 후원방문판매 등) 교육장·홍보관 등의 집합시설에 대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.
3. 특수판매분야의 집합시설에서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하여, 코로나 19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, 서울 시민들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「감염예방법」 제80조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 벌금)되며,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에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,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(구상권)을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집합금지 명령 1부. 끝.



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/08
권태규

협조자

시행 공정경제담당관-12240 (2020.6.8.) 접수 ()
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/
(서소문동)
전화 02)2133-5375 /전송 02)768-8852 / hyungi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집합금지명령

- 서울시는 2020.6.8. 오전 11시를 기하여 서울지역내 특수판매업체 중 고위험 집합 시설(홍보관 등)에 대해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.
- 이는 특수판매 업체의 고위험 집합 시설에서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 벌금)됩니다.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,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게 됩니다.
-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. 코로나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홍보관 형태의 집합 시설은 어르신들께는 특히 더 위험한 장소입니다.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2020. 6. 8.

서울특별시



문의안내 : 서울시다산콜센터 120